

	대분류명 Document Name	표준번호 Standard Number	개정차수 Revision Number
	구매	HGS-Y3A0-2013	0
표준명 Name of Standard	하도급거래 내부 심의위원회 설치 · 운영 실천사항 운영절차서		

## 1. 적용범위

이 실천사항 운영절차서는 하도급거래 내부 심의위원회 설치 · 운영에 관한 제반업무에 적용한다.

## 2. 목적

이 실천사항 운영절차서는 당사가 일정규모 이상의 하도급거래에 대한 공정성 및 적법성 여부 등을 스스로 사전에 심의하게 함으로써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에 이바지하고, 「하도급거래 공정화지침」에서 「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(이하 '하도급법'이라 함) 위반 행위의 사전예방을 위한 인센티브제도 및 「하도급법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」에서 과장금 감경사유로 정한 '하도급거래 내부 심의위원회(이하 '내부 심의 위원회'라 함) 설치 · 운영 가이드라인'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



## 3. 권한과 책임

- 3.1 자재구매 부서장은 이 절차서에 따라 하도급거래 내부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할 권한과 책임이 있다.
- 3.2 하도급거래 내부심의위원회 위원은 심사의 대상이 되는 거래에 대하여 사전 공정성과 적법성을 심의할 권한과 책임이 있다.

## 4. 내부 심의위원회 설치 · 운영 실천사항

### 4.1 기본원칙

이 실천사항은 당사가 공정한 하도급거래를 위해 설치 · 운영하는 내부 심의위원회의 자율성, 적절성 및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필요 최소한의 일반적 사항만을 제시한 것이며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동반 성장구매부 부서장이 제반 여건 등을 고려하여 개별 ·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### 4.2 내부 심의위원회 설치 · 운영 실천사항

#### 4.2.1 내부 심의위원회 구성의 적절성

- ① 내부 심의위원회는 하도급관련업무 담당임원을 포함하여 3인 이상의 임직원으로 구성하되 필요 시, 사외이사 등 외부전문가를 선임할 수 있다.
- ② 기존의 자율준수프로그램(CP) 운용을 위해서 설치된 심의기구 등이 위 ①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내부 심의위원회로 운용할 수 있다.

HD HYUNDAI MARINE SOLUTION	대분류명 Document Name	표준번호 Standard Number	개정차수 Revision Number
	구매	HGS-Y3A0-2013	0
표준명 Name of Standard	하도급거래 내부 심의위원회 설치 · 운영 실천사항 운영절차서		

※ 내부 심의위원회 구성

구분	하도급거래 내부심의위원회	협력회사 등록/취소 심의위원회	협력회사 제재 심의위원회
위원장	동반성장구매 담당 임원		
위원	동반성장구매부 부서장		
	동반성장구매부 직책과장		
	법무팀장		
	회계팀장		
	동반성장구매부 운영담당자		
	사안별 위원장이 별도 지정하는 자(필요 시)		

- 심의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부재 시 동반성장구매부 부서장 위임 진행

#### 4.2.2 내부 심의위원회 운용의 실효성

- ① 내부 심의위원회를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개최하여야 하며, 현안 발생 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.
- ② 내부 심의위원회는 개별계약금액이 20억원 이상인 하도급 거래에 대하여 계약체결 및 가격 결정 과정의 공정성, 하도급법 등 관련 법규에 대한 적법성 여부 등을 사전 심의하여야 한다.
- ③ 하도급법 관련 사전 심의사항 예시
  - 서면계약서 발급의무 준수여부
  - 내국신용장 개설의무 준수여부
  -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의무 준수여부
  -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금지 위반여부
  - 물품 등의 구매강제금지 위반여부
  - 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금지 위반여부
- ④ 내부 심의위원회는 협력회사 등록 · 취소기준 및 절차의 적절성 여부를 사전 심의하여야 한다.
- ⑤ 내부 심의위원회는 협력회사 미선정 또는 등록취소에 대한 이의신청 건을 심의하여야 한다.
- ⑥ 필요 시 관련 협력회사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익명성이 보장되어야 한다.

	대분류명 Document Name	표준번호 Standard Number	개정차수 Revision Number
	구매	HGS-Y3A0-2013	0
표준명 Name of Standard	하도급거래 내부 심의위원회 설치 · 운영 실천사항 운영절차서		

- ⑦ 심의 안건이 하도급법 등 관련 법규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 시정하여야 하며, 관련 임직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위반정도에 상응하는 제재조치(예시, 인사상 불이익 등)를 취하여야 한다.
- ⑧ 내부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및 조치사항 등과 관련한 문서는 심의종료일로부터 3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.

## 5. 첨부

- 5.1 첨부 #1 : 하도급거래 내부 심의위원회 운영규정 (협력회사 선정 · 계약 · 등록/취소)
- 5.2 첨부 #2 : 하도급거래 내부 심의위원회 심의서(선정 심의)
- 5.3 첨부 #3 : 하도급거래 내부 심의위원회 심의서(계약 심의)
- 5.4 첨부 #4 : 하도급거래 적법성 사후 검증 심의서
- 5.5 첨부 #5 : 하도급거래 내부 심의위원회 심의서(취소 심의)
- 5.6 첨부 #6 : 하도급거래 내부 심의위원회 심의서 평가표양식(선정/계약/취소 심의)
- 5.7 첨부 #7 : 신규 협력회사 등록심의서 양식(전산화)

# 하도급거래 내부 심의위원회 운영(案)

## 1. 목적

일정 규모 이상의 하도급 거래에 대한 '공정성' 및 '적법성' 여부에 대한 자체 심의 강화로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의 확립 및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의 사전 예방 목적

## 2. 하도급거래 내부심의위원회 운영 원칙 및 기준(案)

구분	상세 추진 내용	관련부서	비고										
위원회 구성 및 개최시기	<p>1. 위원장 : 구매 담당 중역</p> <p>2. 위원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① 동반성장구매 부서장</li> <li>② 해당구매과장</li> <li>③ 원가/회계담당</li> <li>④ 컴플라이언스 팀장</li> <li>⑤ 사안별 위원장이 별도 지정하는 자</li> </ul> <p>3. 개최시기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① 정기 : 매월 마지막주 수요일</li> <li>② 임시 : 현안 발생 시</li> <li>③ 심의 대상이 없을 경우 제외</li> </ul>	동반성장구매부 회계부 법무팀	-										
심의 대상	<p>1. 기준</p> <table border="1"> <tr> <td>전년도 하도급대금</td> <td>당해 년도 심의 대상</td> </tr> <tr> <td>1,000억원 미만</td> <td>[전년도 하도급대금 x 10%] 이상 거래 업체</td> </tr> <tr> <td>1,000억원 ~ 3,000억원</td> <td>[전년도 하도급대금 x 5%] 이상 거래 업체</td> </tr> <tr> <td>3,000억원 ~ 6,000억원</td> <td>[전년도 하도급대금 x 2%] 이상 거래 업체</td> </tr> <tr> <td>6,000억원 이상</td> <td>[전년도 하도급대금 x 1%] 이상 거래 업체</td> </tr> </table> <p>2. 선정</p> <p>매월 계약분에 대해 구매부 운영 담당자에 의해 선정</p>	전년도 하도급대금	당해 년도 심의 대상	1,000억원 미만	[전년도 하도급대금 x 10%] 이상 거래 업체	1,000억원 ~ 3,000억원	[전년도 하도급대금 x 5%] 이상 거래 업체	3,000억원 ~ 6,000억원	[전년도 하도급대금 x 2%] 이상 거래 업체	6,000억원 이상	[전년도 하도급대금 x 1%] 이상 거래 업체	동반성장구매부	-
전년도 하도급대금	당해 년도 심의 대상												
1,000억원 미만	[전년도 하도급대금 x 10%] 이상 거래 업체												
1,000억원 ~ 3,000억원	[전년도 하도급대금 x 5%] 이상 거래 업체												
3,000억원 ~ 6,000억원	[전년도 하도급대금 x 2%] 이상 거래 업체												
6,000억원 이상	[전년도 하도급대금 x 1%] 이상 거래 업체												
심의 내용	<p>1. 협력업체 선정 심의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① 협력업체 선정의 공정성</li> <li>② 단가결정의 공정성/적법성</li> </ul> <p>2. 협력업체 계약 심의(도급계약체결 후~착수 전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①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</li> <li>② 서면계약서 교부의무 준수</li> <li>③ 내국신용장 개설의무 준수</li> <li>④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 준수</li> <li>⑤ 물품 등 구매강제 금지</li> <li>⑥ 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금지</li> </ul> <p>3. 협력업체 등록취소기준 및 절차의 적정성 심의</p> <p>4. 협력업체 미선정, 등록 취소에 대한 이의 심의</p> <p>5. 기타 거래관련 이의 신청 심의</p>	동반성장부매부 회계부 법무팀	-										
심의 결과	<p>1. 심의결과 조치 및 반영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① 심의결과 즉시 조치에 다른 하도급 거래 질서 기초 확립</li> <li>② 하도급 거래에 관한 공정화 원칙, 자체 교육 실시(수시)</li> <li>③ 경미한 법규 위반 사항 발생 시, 자체 시정 조치 시행</li> <li>④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발생 시, 제재 조치</li> </ul> <p>2. 협력업체 거래관련 각종 규정 및 절차서 지속 개선(필요 시)</p> <p>3. 이의 신청에 대한 공정하고 원만한 해결</p>	동반성장구매부	-										
기타	<p>1. 심의결과 사후관리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① 심의결과 관련부서 통지 및 이행여부 지속 점검</li> <li>② 심의 후 3년이상 자료 보관</li> </ul>	동반성장구매부	-										

### 3. 하도급거래 내부 심의위원회 심의/평가항목

협력업체 선정 공정성 · 투명성 평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견적대상업체를 복수로 선정하였는가?</li> <li>· 견적대상업체의 견적 가격을 비교 · 검토하였는가?</li> <li>· 견적대상업체 선정 시 견적 가격 외에 '품질', '서비스' 등을 고려하였는가?</li> <li>· 장기계약(3년 이상)인 경우, 향후 3년간 예상 발주 물량을 예시했는가?</li> <li>· 사양 · 규격 등 특정업체에 유리하도록 제한하지는 않았는가?</li> <li>· 구매품에 소요되는 부품을 자사 또는 계약사의 제품을 쓰도록 강제하였는가?</li> <li>· 입찰 과정에서 불합리한 자격 요건을 제시하여 특정 사업자를 선정하지 않았는가?</li> <li>· 계열사에 대해 비계열사와 동일한 구매 조건으로 계약하였는가?</li> <li>· 계열사에 가격, 품질, 납기, A/S 등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지 않았는가?</li> <li>· 계열사에 부당하게 고가로 매입하는 부당한 지원 행위를 하지 않았는가?</li> </ul>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단가 결정 시 협력업체와 사전 협의하였는가?</li> <li>· 견적 가격 검토 및 단가 결정 시 물가 수준을 반영하였는가?</li> <li>· 수의계약 시 현저히 낮은 단가 적용은 없었는가?</li> <li>· 일률적인 단가 인하율에 맞춰 단가에 대해 합의한 사실이 있는가?</li> </ul>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가격 결정 당시 조건에 비해 실제 발주 시 조건 차이가 나지는 않았는지? - 물량, 사양, 대금지급, 납기/운반/포장 등 조건을 업체에 불리하게 변경했는가?</li> <li>· 발주변경에 불공정한 행위가 없었는지? - 불확실한 발주행위(단가미정, 납기미정 등)의 발주서를 발행하였는지? - 고객 요청에 의한 발주내용 변경 시 협력업체의 생산현황을 고려 후 처리 여부 - 다량 발주를 전제로 단가 결정 후 일부(소량)만 발주한 경우는 없는지? - 협력업체의 사정으로 인한 발주 변경 시, 공문 접수 후 처리하였는지?</li> <li>· 자재 가격하락 등 타당한 단가인하 사유없이 일률적으로 단가를 인하하였는지?</li> <li>· 경쟁입찰 또는 부대입찰의 경우 당초 낙찰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결정했는지?</li> </ul>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서면 계약서 기명, 날인, 간인 후 즉시 교부하였는지?</li> <li>· 서면 계약서 내용에 대한 고지 및 계약서 조항에 불공정거래행위가 없었는지?</li> <li>· 공사 착수 전 서면 계약서 작성 및 교부를 하였는지?</li> </ul>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수출물품의 경우 제조위탁일로부터 15일 이내 Local L/C를 개설해 주었는지?</li> <li>· 협력업체가 Local L/C 개설 의사를 확인하였는가?</li> </ul>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불공정하게 물품, 장비, 역무 공급 등을 협력업체에게 매입 또는 사용토록 강요하지 않았는지?</li> </ul>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수익, 경영악화 등 불합리한 이유로 경제적 이익(협찬금, 장려금, 지원금 등)을 요구하였는지?</li> <li>· 거래개시, 다량거래 등을 조건으로 경제적 이익을 요구하였는지?</li> </ul>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기타 수급업자의 법률상 의무가 없음에도 경제적 이익을 요구하였는지?</li> </ul>

협력업체 등록 · 취소기준 및 절차의 적정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협력업체 등록 기준의 적정성</li> </ul>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협력업체 등록취소 기준의 적정성</li> </ul>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협력업체 등록취소 절차의 적정성</li> </ul>
협력업체 미선정, 등록 취소에 대한 이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협력업체 미선정의 적정성</li> <li>· 협력업체 등록취소의 적정성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지속적으로 거래하던 업체를 특별한 사유없이 거래를 중단하였는가?</li> <li>- 등록취소 사유가 협력업체 등록취소기준에 부합하는가?</li> <li>- 등록취소 진행 과정상 불공정/불합리한 점은 없었는가?</li> </ul> </li> </ul>
기타 이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이의신청에 대한 전반적 심의</li> </ul>



## 하도급거래 내부심의위원회 심의서[선정 심의]

I. 심의일자 :

II. 심의장소 :

III. 내부 심의 위원회

구 분	소 속	직 책	직 급	성 명	서 명	비 고
위원장	재무 · 구매	담당임원				
위원	동반성장구매부	부서장				
	법무팀	팀장				
	회계팀	팀장				
	동반성장구매부	운영담당				

IV. 심의대상

1) POR 번호 :

2) 품 목 :

3) 계약예정 :

4) 품목업체 :

5) 견적업체 :



V. 주요 심의 내용

심의 항목	심의 결과 (적격, 부적격)	조치 내용	비 고
① 견적 대상업체 복수 여부			
② 견적 대상업체 견적가격 비교 · 검토 여부			
③ 견적 가격 외 '품질', '서비스' 등 고려 여부			
④ 장기 계약 시 향후 3년간 예상발주 물량 소개 여부			
⑤ 타업체 참여 제한 및 특정업체에 유리한 거래 여부			
⑥ 입찰과정상 불합리한 자격요건 제시 여부			
⑦ 계열사와 비계열사의 구매조건의 동일성 여부			
⑧ 계열사를 위한 차별 또는 부당한 지원행위 여부			
⑨ 단가 결정 시 협력업체와 사전 협의 여부			
⑩ 물가수준을 반영한 단가 검토 및 결정 여부			
⑪ 수의계약 시 '저가하도급기준에 미달하는지 여부			
⑫ 일률적인 단가인하에 따른 단가합의가 있는지 여부			
⑬ 기타			

## 하도급거래 내부심의위원회 심의서[계약 심의]

I. 심의일자 :

II. 심의장소 :

III. 내부 심의 위원회

구 분	소 속	직 책	직 급	성 명	서 명	비 고
위원장	재무 · 구매	담당임원				
위원	동반성장구매부	부서장				
	법무팀	팀장				
	회계팀	팀장				
	동반성장구매부	운영담당				

IV. 심의대상

1) 계약번호 :

2) 품 목 :

3) 계약예정 :

4) 품목업체 :

5) 견적업체 :



V. 주요 심의 내용

심의 항목	심의 결과 (적격, 부적격)	조치 내용	비 고
① 가격결정 당시 조건과 실제 발주 시 조건의 차이 여부 - 물량, 사양, 대금지급조건, 납기 등 불리한 변경여부			
② 발주변경의 불공정성 - 다량발주를 전제로 단가결정 후 소량발주했는지 여부 - 협력업체의 사정으로 인한 발주변경 시 공문처리 여부			
③ 부당한 일률적 단가인하 여부			
④ 서면계약서 기명, 날인, 간인 후 교부 여부 - 공사착수 전 서면계약서 작성 및 교부 여부			
⑤ 계약서 조항에 불공정거래행위가 있는지 여부			
⑥ 수출물품의 경우 내국신용장 개설 여부			
⑦ 부당한 구매강제행위가 있는지 여부			
⑧ 경제적 이익을 부당하게 요구하였는지 여부			

## 하도급거래 적법성 사후 검증 심의서

I. 심의일자 :

II. 심의장소 :

III. 내부 심의 위원회

구 분	소 속	직 책	직 급	성 명	서 명	비 고
위원장	재무 · 구매	담당임원				
위원	동반성장구매부	부서장				
	법무팀	팀장				
	회계팀	팀장				
	동반성장구매부	운영담당				

IV. 심의대상

1) 계약번호 :

2) 품 목 :

3) 계약예정 :

4) 품목업체 :

5) 견적업체 :



V. 주요 심의 내용

심의 항목	점검 내용	심의 결과 (적격, 부적격)	비 고
지급기한내 대금지급여부	대금지급관련 하도급법을 준수하였는가? (60일내 지급)		
하자보수 부당책임전가	하자발생 시, 그 책임을 부당하게 협력사에게 전가하지 않았는가?		
기술유용행위 발생여부	협력사의 기술을 유용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았는가?		
납기 및 수령 지연여부	납기 및 수령지연 발생여부 및 공정한 페널티 적용을 하였는가?		
윤리경영 이행여부	하도급법 제5조(물품등의 구매강제 금지) 및 제 12조의 2(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금지) 등을 위반하지 않았는지?		

## 하도급거래 내부심의위원회 심의서[기타]

I. 심의일자 :

II. 심의장소 :

III. 내부 심의 위원회

구 분	소 속	직 책	직 급	성 명	서 명	비 고
위원장	재무 · 구매	담당임원				
위원	동반성장구매부	부서장				
	법무팀	팀장				
	회계팀	팀장				
	동반성장구매부	운영담당				

IV. 심의대상

등록 / 취소기준 및 절차	협력업체 미선정, 등록취소에 대한 이의
<input type="radio"/> 등록 / 취소기준 및 절차 개요	<input type="radio"/> 이의신청 개요

V. 주요 심의 내용

심의 항목	심의 결과 (적격, 부적격)	조치 내역	비 고
① 협력업체 등록 기준의 적정성			
② 협력업체 등록취소 기준의 적정성			
③ 협력업체 등록취소 절차의 적정성			
④ 협력업체 미선정의 적정성			
⑤ 협력업체 등록취소의 적정성 - 사전 예고없이 등록취소를 하였는지 여부 - 등록취소사유가 등록취소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 - 등록취소 과정이 불공정/불합리한지 여부			
⑥ 이의신청 사건에 대한 전반적 심의			

VI. 기 타

## 협력업체 선정 심의 평가표

1. 심의 일자 :

2. 심의 대상 :

3. 심의 평가표

구 분	평가 항목	평가 결과	조치 의견
협력업체 선정 공정성 · 투명성 평가	· 견적대상업체를 복수로 선정하였는가?		
	· 견적대상업체의 견적가격을 비교 · 검토하였는가?		
	· 견적대상업체 선정 시 견적가격 외에 '품질', '서비스' 등을 고려하였는가?		
	· 장기계약(3년 이상)인 경우, 향후 3년간의 예상 발주물량을 예시했는가?		
	· 원자료를 일반적 사양으로 해도 사용상 문제가 없는 품목을 사양 · 규격을 특정업체로 제한함으로써 타업체 참여를 불가능하게 하고 특정업체와 거래하지 않았는가?		
	· 구매제품에 소요되는 부품을 자사 또는 계열사의 제품을 쓰도록 사양서를 만들거나 업체에게 강제하지 않았는가?		
	· 제품 구매를 위한 입찰과정에서 불합리한 자격요건을 제시하여 특정사업자를 선정하지 않았는가?		
	· 계열사에 대해서도 비계열사와 동일한 구매조건으로 하였는가?		
	· 계열사에 가격, 품질, 납기, A/S 등 현저하게 유리한 구매조건을 제시하는 행위를 하지 않았는가?		
	· 계열사 제품을 고가로 매입하여 계열사에 부당한 지원행위를 하지 않았는가?		
단가결정의 공정성 · 적법성 평가	· 단가결정 시 협력업체와 사전 협의하였는가?		
	· 견적가격 검토 및 단가결정 시 물가수준을 반영한 단가 검토 및 결정을 하였는가?		
	· 수의계약 시 '저가하도급기준'보다 현저히 낮은 단가 적용은 없었는가?		
	· 일률적인 단가 인하율에 맞춰 단가 합의를 한 사실이 있는가?		

2025.

하도급거래심의위원회

성명

(인)

## 협력업체 계약 심의 평가표

1. 심의 일자 :

2. 심의 대상 :

3. 심의 평가표

구 분	평가 항목	평가 결과	조치 의견
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가격 결정 당시 조건에 비해 실제 발주 시 조건 차이가 나지는 않았는지? - 물량, 사양, 대금지급, 납기/운반/포장 등 조건을 업체에 불리하게 변경했는가?</li> </ul>		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발주변경에 불공정한 행위가 없었는지? - 불확실한 발주행위(단가미정, 납기미정 등)의 발주서를 발행하였는지? - 고객 요청에 의한 발주내용 변경 시 협력업체의 생산현황을 고려 후 처리 여부 - 다량 발주를 전제로 단가 결정 후 일부(소량)만 발주한 경우는 없는지? - 협력업체의 사정으로 인한 발주 변경 시, 공문 접수 후 처리하였는지?</li> </ul>		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자재 가격하락 등 타당한 단가인하 사유없이 일률적으로 단가를 인하하였는지?</li> </ul>		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경쟁입찰 또는 부대입찰의 경우 당초 낙찰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결정했는지?</li> </ul>		
서면계약서 교부의무 준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서면 계약서 기명, 날인, 간인 후 즉시 교부하였는지?</li> </ul>		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서면 계약서 내용에 대한 고지 및 계약서 조항에 불공정거래행위가 없었는지?</li> </ul>		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공사 착수 전 서면 계약서 작성 및 교부를 하였는지?</li> </ul>		
내국신용장 개설의무준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수출물품의 경우 제조위탁일로부터 15일 이내 Local L/C를 개설해 주었는지?</li> </ul>		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협력업체가 Local L/C 개설 의사를 확인하였는가?</li> </ul>		
구매강제금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불공정하게 물품, 장비, 역무 공급 등을 협력업체에게 매입 또는 사용토록 강요하지 않았는지?</li> </ul>		
경제적이익의 부당요구금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수익, 경영악화 등 불합리한 이유로 경제적 이익(협찬금, 장려금, 지원금 등)을 요구하였는지?</li> </ul>		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거래개시, 다량거래 등을 조건으로 경제적 이익을 요구하였는지?</li> </ul>		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기타 수급업자의 법률상 의무가 없음에도 경제적 이익을 요구하였는지?</li> </ul>		

2025.

하도급거래심의위원회

성명

(인)